

# 외환 행복knowhow 통장 특약

2015. 6.23 개정

<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: 제2015-약관-76호>

**제1조(적용범위)** 외환 행복knowhow 통장(이하 '이 통장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약관을 적용합니다.

**제2조(예금과목)** 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**제3조(가입대상)**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(개인사업자 불가)

**제4조(가입제한)** 이 통장의 가입은 1인당 1계좌에 한합니다.

**제5조(가입금액)** 이 통장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

**제6조(가입기간)** 이 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

**제7조(이자)** ① 이 통장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 기준일에 썸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가산합니다.

1. 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, 6, 9, 12월 넷째주 토요일

2. 원가일 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

② 이 통장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
가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5천만원 미만

나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5천만원 이상

③ 이 통장에 매 결산일이 속한 달의 전월(2월,5월,8월,11월)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아래 연금종류 수급실적이 과거 3개월이내에 2개월이상 있는 경우에는, 매 결산기간 시작일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해당 결산기간 평균잔액 2백만원 미만 구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이때 제②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가.공적연금 :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

나.개인연금 : 외환은행의 연금지급식 상품(예금,신탁,펀드)에서 입금되는 연금

다.퇴직연금 : 외환은행의 퇴직연금에서 입금되는 연금

라.주택연금 : 외환은행의 주택역모기지론 상품에서 입금되는 연금

마.입금내역이 연금성 자금으로 전산상 자동 인식되는 경우

④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또는 이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전환한 계좌인 경우 전환일이 속한 결산기에 대해서는 해당 결산기 최초 보유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**제8조(수수료 면제서비스의 제공)**① 아래 '제공조건' 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 1,2 조항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구 분	제 공 조 건
입금실적	전월 또는 전전월에 이 통장으로 연금 또는 급여 <sup>(주1)</sup> 를 받거나, 전월에 고객이 지정한 특정일 전후 2영업일내 건별 50만원이상 입금된 경우
카드실적	전월에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
주거래	전월 이 통장의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공과금	전월 이 통장에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(단, 지로, CMS 를 통한 자동납부에 한 함)
아파트 관리비	전월 또는 전전월에 이 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

(주1) 연금,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

- 제7조 ③항에서 정한 연금
- 당행 급여이체(창구, 인터넷)및 타행입금(지로대량이체, 결제원CMS 대량이체, 타행환, 전자금융)
  - 입금내역(코드)이 연금, 급여성 자금으로 전산상 자동 인식되는 경우
  - 거래내역이 ‘급여’, ‘상여금’, ‘상여’, ‘월급’, ‘연금’, ‘Salary’, ‘Bonus’, ‘Pay’, ‘Payroll’ 의 용어로 입금되는 경우
- ☞ 기업체명과 혼용시 앞 또는 뒤 위치만 인정. 다른 용어나 다른 위치에 위치시 급여 불인정
- ☞ 당행 급여이체시 거래내역에 의한 영업점 창구 입금분은 제외

**② 우대서비스 1 :** ①항의 제공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아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해 제공)

- 전자금융<sup>(주2)</sup>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 
(주2)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
- 외환은행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수수료
- 다른은행 CD/ATM<sup>(주3)</sup>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 
(주3) 은행점포내 CD/ATM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한함
- 납부자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수수료

**③ 우대서비스 2 :** ①항의 제공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아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해 제공)

- 전자금융<sup>(주2)</sup>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
- 외환은행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수수료
- 다른은행 CD/ATM<sup>(주3)</sup>을 이용한 출금수수료
- 납부자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수수료
- 외환은행 CD/ATM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
- 창구송금수입수수료(타행환)

- ④ 제공방법 : 제공조건별 충족월 다음달에 우대서비스 제공
- ⑤ 우대서비스 특례 : 최초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'우대서비스 1, 2'를 제공합니다.

부칙 (제정)

이 약관은 2011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)

이 약관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)

이 약관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3)

이 약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4)

이 특약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5)

이 특약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6)

① 이 특약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( 경과조치 ) 이 특약 변경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적용된다.

부칙 (7)

이 특약은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(경과조치) 변경시행일 이전 가입한 고객의 연금수급실적 우대금리는 시행일이후의 연금수급실적 유무에 따라서 적용합니다.

부칙 (8)

이 특약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 (9)

이 특약은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며, 기 가입고객은 변경 시행일 이후 제공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우대서비스가 제공됩니다.